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9. 21 선고 2022가단1065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9. 7.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9. 7. 26. 접수 제438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도하면서 그 채권자와 사이에서 매매대금채권과 그 채권자의 기존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수익자인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매도행위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매도행위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다529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채무자 B이 원고에 대하여 442,809,200원(총 체납세액 516,319,970원 중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된 채무)의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대물변제 또는 기존 채무의 변제의 방편¹⁾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이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음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국세채무 부담에 관하여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36333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기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소외 B은 국세채납자이고, 피고는 B의 누나입니다(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조세채권의 내역

1) B은 2009. 10. 9.부터 2016.11.23., 2019.5.13.일부터 현재까지 부산 남구 C건물 D호에서, 2016.11.24.일부터 2019.5.12.까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건설/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사업자기본사항조회).

2)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8.2기~2020.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중간예납에 대하여 원고 산하 해운대세무서장은 2018.2기 ~ 2019.1기 부가가치세 7건 207,262,730원을, 2018.12월귀속 사업소득세 신고무납부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1건 12,956,230원을 각 고지하였습니다.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9.2기 ~ 2020.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중간예납에 대하여 원고 산하 수영세무서장은 2019.2기, 2020.2기 부가가치세 2건 18,406,440원을, 2017귀속~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및 무신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8건 245,383,930원을 각 고지하였습니다.

4) 그러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가산금, 증가산금을 포함한 채납세액은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516,319,97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채납유무조회 참조,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표1】 소외 B의 국세체납액(2022년 3월 기준)

(단위: 원)

순번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포함)	납세의무 성립일	관할
1	종합소득세	201801	2018.11.01	2018-11-30	11,238,000	3,619,560	2018.11.30	수영
2	종합소득세	201701	2018.12.01	2018-12-31	45,281,720	54,561,850	2017.12.31	수영
3	종합소득세	201801	2019.01.01	2019-01-31	11,238,000	9,612,140	2018.11.30	수영
4	부가가치세	201907	2019.10.01	2019-10-25	7,160,000	8,878,400	2019.10.25	수영
5	종합소득세	201801	2019.10.01	2019-11-30	66,157,910	75,639,500	2018.12.31	수영
6	종합소득세	201901	2019.11.01	2019-11-30	22,158,000	27,309,600	2019.11.30	수영
7	종합소득세	201901	2020.01.01	2020-02-02	22,158,000	17,491,210	2019.11.30	수영
8	종합소득세	201801	2020.09.01	2020-10-15	59,782,700	59,275,830	2018.12.31	수영
9	부가가치세	202007	2021.05.01	2021-05-31	11,246,440	12,179,980	2020.12.31	수영
10	종합소득세	202001	2021.12.01	2021-12-31	7,369,600	7,651,580	2020.12.31	수영
11	부가가치세	201707	2018.06.01	2018-06-30	93,846,500	81,133,240	2017.12.31	해운대
12	부가가치세	201807	2018.10.01	2018-11-06	22,700,000	24,843,150	2018.12.31	해운대
13	부가가치세	201801	2019.01.01	2019-02-11	39,456,920	51,589,660	2018.06.30	해운대
14	부가가치세	201407	2019.01.01	2019-02-15	15,581,230	20,372,110	2014.06.30	해운대
15	부가가치세	201801	2019.02.01	2019-03-15	2,739,360	3,560,980	2018.12.31	해운대
16	부가가치세	201807	2019.03.01	2019-04-15	14,445,720	18,670,990	2018.12.31	해운대
17	부가가치세	201901	2019.04.01	2019-05-15	18,493,000	23,763,250	2019.04.25	해운대
18	사업소득세	201812	2019.04.01	2019-05-15	12,956,230	16,166,940	2019.02.10	해운대
	합계				484,009,330	516,319,970		

나. 소외 B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9. 7. 24. 누나인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을 10백만원에 체결하고, 2019. 7. 26.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5호증 개별공시지가 조회).

3. 손해행위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

위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표 1] 중 순번 4, 6, 7, 순번 9 내지 10 제외)은 이 사건 매매계약(2019. 7. 24.)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총 채납세액 516,319,970원 중 조세채권 442,809,2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입니다.

나. 사해행위

1) 채무초과 및 사해행위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채무자가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재산 상태를 보면, 아래 [표2]와 같습니다.
(갑 제6호증 재산현황표).

[표2] 이 사건 매매계약일('19. 7. 24) 당시 B의 재산 내역

순번	항목	금액(원)		증거
적극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39,880,620원		소갑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갑 5 개별공시지가
2	압류 부동산	토지	18,597,600원	소갑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갑 8 개별공시지가
		건물 (아파트)	112,000,000원	소갑 9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갑10 공동주택가격
합계		170,478,220원		소갑 6 체납자재산현황표
소극재산				
1	조세채무 ([표1] 순번 4,6,7,9,10 제외)	442,809,200원		소갑1 체납유무 조회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합계		-272,330,980원		

라)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중에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9. 7. 26.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소외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B은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B의 누나로서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라. 소결

그렇다면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 7. 24.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부산지방국세청 채납추적과가 B에 대한 채납추적조사 중 기획분석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022. 2. 15.경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 등기소 2019. 7. 26. 접수 제438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남구 H 대 249.1㎡

공유자지분 249100분의 14820. 글.

1) 피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B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지분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